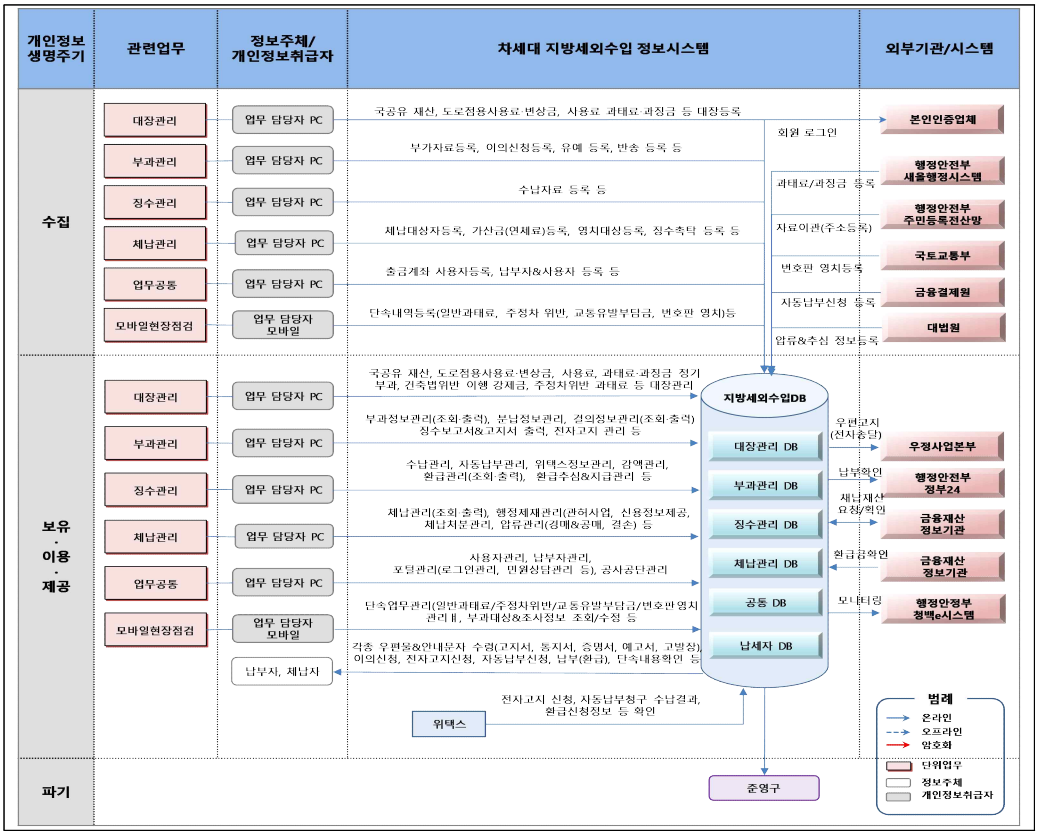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창원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케이씨에이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8.3
~
2026.9.2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·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• 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개인정보파일 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 colspan="3"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</td><td colspan="3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</td><td>-</td><td>과태료 체납관리</td></tr>
<tr><td>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관리</td><td colspan="3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</td><td>-</td><td>금연구역 흡연자의 위반확인서 근거로 과태료 부과 및 관리</td></tr>
<tr><td>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</td><td colspan="3">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부동산소재지(지번,지목,면적)</td><td>-</td><td>과징금 부과징수</td></tr>
<tr><td>법규위반차량체납자관리파일</td><td colspan="3">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</td><td>-</td><td>법규위반차량 체납자 관리</td></tr>
</table>

	과태료부과 자료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과태료 부과처리 활용
	세외수입 과오납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과오납관리
	세외수입 수납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수납관리
	세외수입 압류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압류관리
	세외수입감 액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감액관리
	세외수입결 손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결손관리
	세외수입부 과관리	이름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부과관리
	세외수입체 납관리	이름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-	세외수입 체납관리
	도로점용허 가대장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법인번호	-	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및 점용허가자 관리
	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금연구역 흡연자의 위반확인서 근거로 과태료 부과 및 관리
	금연구역 흡연자 과 태료 부과 관리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	-	금연구역 흡연자의 위반확인서 근거로 과태료 부과 및 관리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	1. 개인정보 처리 흐름 -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을 위해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 - 창원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-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		

<table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
-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‘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
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 보호법령”을 반영
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을 반영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
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tr><td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 colspan="2"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『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『자동차관리법』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『국유재산법』제32조(사용료),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』제22조(사용료), 제81조(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
- 내부 규정인『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』에는『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』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, '출력·복사 시 안전조치' 개인정보파일 등록, 파기, 접속기록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음.
-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'표준개인정보파일 목록'의 표준개인정보파일에 맞게 기존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재정비하여야 함.
-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,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을 수정하여야 하고,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권고함
-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/업무에 대한 위수탁점검결과을 보고하여야 함
-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유노출 방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-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을 수정하여야 하고, 제3자 제공 내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공개)
- 내부관리계획 수정
- 대상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하도록 개선
-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점검 (위수탁 현황 점검결과 보고)
- 개인정보파일 등록 (표준개인정보파일 기준)
- 개인정보 출력시 보호조치 강화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3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4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
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음
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
•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,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.</td></tr>
</table>